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20-179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지역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·계층의 회원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·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, 제4조)

-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위탁

다.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 ~ 제7조)

-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시정요구

-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및 환수 절차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생활체육진흥법」 및 「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10. 8. ~ 10. 28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5) 제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20.11.10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생활체육지도자”란 「생활체육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스포츠클럽”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있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3. “공공체육시설”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스포츠 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「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4조(지원신청 및 교부)** ① 제3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결과 지원이 결정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

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해당 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회계관리 등)**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지도·감독)**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,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.

**제7조(환수)** ① 구청장은 지도·감독결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27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3조(지원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「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「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(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)

1.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
2.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
3.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
4.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·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

### 4. 작성자 : 관광일자리국 생활체육과 강종업 (☎ 3153-9862)